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단5230038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0나9162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단5230038 판결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재명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노원

3. C

변 론 종 결 2020. 10. 14.

판 결 선 고 2020. 11. 1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1,158,759원 및 그 중 40,539,944원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9. 6. 2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A에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7. 22. 접수 제2658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C 사이에 생긴 각 부분은 피고 A, C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 3항.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5. 9. 접수 제17378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19. 5. 1. 접수 제165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회복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신용보증약정

피고 A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합니다)으로부터 기운분할상환대출 4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8. 9. 4.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4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8. 9. 4.부터 2023. 9. 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위 약정에 의하여 같은 날 원고로부터 보증원금 4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8. 9. 4.부터 2023. 9. 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발급받았습니다(갑제1, 2호증).

나. 보증계약의 내용

(1) 보증료 및 비용 등

원고와 피고 A은 신용보증약정을 함에 있어, 피고 A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 하였을 경우에 보증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 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갑제1호증).

(2) 지연손해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에 의하면, 원고 재단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 A으로부터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손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 연 10%입니다(갑제5호증).

다. 대위변제 및 대지급금

(1) 피고 A이 2019. 7. 15.경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한 신용보증 사고를 발생시켜, 원고는 2019. 9. 24. 소외 은행에 40,539,944원(= 원금 40,000,000원 + 이자 539,944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습니다(갑제3호증).

(2) 원고가 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618,815원입니다(갑제4호증).

2. 결론

그렇다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돈 합계 41,158,759원(= 대위변제금 40,539,944원 + 대지급금 618,81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0,539,94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손해금률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초사실(피고 B, C 부분)

가. 피고 A은 2018. 4.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5억 4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F조합(2019. 12. 24. G회사로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 B 관련 부분

- 1) 2019. 5.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 2) 위 2019. 5. 1.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9. 5. 9. 같은 날의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 3) 2019. 6.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 4) 피고 B은 2019. 7. 30. 피고 A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단34233호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12. “피고 A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와 2019. 6. 26. 접수 제235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등기소 2019. 5. 9. 접수 제17378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19. 5. 1. 접수 제165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무변론 판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청구원인은 ‘피고 A이 법무사와 공모하여 각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2019. 5. 1.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19. 6.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라는 것이다.

5) 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 및 회복등기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C 관련 부분

1)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사이에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다가 2019. 6. 25. 피고 A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C는 2019. 7.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A의 재산관계) 1) 피고 A의 적극재산: 합계 661,805,075원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2018. 4. 18. 기준 600,965,400원

② 강릉시 H 답 3359㎡ 중 1259/3359 지분의 시가는 2018. 4. 27.경 기준:

112,856,850원(301,101,000원 × 1259/3359) 중 35,270,366원

③ 강릉시 I 답 2532㎡ 중 1032/2532 지분의 시가는 2018. 4. 27.경 기준:

81,815,754원(200,734,000원 × 1032/2532) 중 25,569,309원

[②, ③ 부분은 해당 부분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 J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실질적인 재산으로 봄]

2) 피고 A의 소극재산: 합계 844,338,364원

① 원고에 대한 채무: 40,539,944원

② G회사에 대한 채무: 420,000,000원

③ K에 대한 채무: 104,000,000원

④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채무: 3,987,090원

⑤ L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5,817,330원

⑥ 피고 B에 대한 채무: 26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G회사, F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피보전채권

주문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A에 대하여 41,158,759원 및 그 중 40,539,944원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채권이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 A은 2019. 5. 1.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 B에게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이에 어긋나는 피고 B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B의 선의 여부

위와 같이 사해행위 및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위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사실은 피고 B이 주장·증명해야 할 것인데,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실 및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2019. 5. 1.자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원상회복으로 그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원상회복 관련 청구취지는 이 사건 2019. 5. 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고, 위 회복등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2019. 5.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피보전채권

주문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A에 대하여 41,158,759원 및 그 중 40,539,944원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채권이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 A은 2019. 6. 25.(피고 C는 실제로는 2019. 7. 초순경에 매매예약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에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 A의 매매예약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이에 어긋나는 피고 C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C의 선의 여부

위와 같이 사해행위 및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위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사실은 피고 C가 주장·증명해야 할 것인데,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보았다는 것이어서,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2019. 6. 25.자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2019. 7. 22.자 각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각 청구와 위 인정범위 내에서 피고 B의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동주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강원도 강릉시 M 대 714㎡
2. 강원도 강릉시 M
[도로명주소] 강원도 강릉시 N
목조 나무지붕 단층주택 115.02㎡
3. 강원도 강릉시 O 전 1709㎡
4. 강원도 강릉시 P 전 208㎡. 끝.

1) 당사자들 사이에 금액에 대해서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기재한다.